

#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안 번호	433
----------	-----

제출년월일 : 1997. 8. 1 .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 1. 제안이유

###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4조

### ○ 사 유

- '96. 5. 28 개정한 진주권행정협의회 명칭 부적정으로 자치단체 공통 특성을 살린 명칭으로 개정
- 민선자치시대 정착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확대 조정

## 2. 추진과정

○ 진삼연담권 행정협의회 구성 : '88. 11. 1(진주시, 진양군, 삼천포시, 사천군, 고성군)

○ 진주권행정협의회로 개정 : '96. 5. 28(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산청군)

※ 행정협의회 명칭 부적정으로 미시행

○ 행정협의회 정비에 따른 회의 개최

· 회의일시 : '96. 4. 3. 11:00

· 회의장소 : 진주시청

· 참석대상 :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기획실장(담당관)

· 내 용 : 행정협의회 규약정비 협의(명칭변경 및 협의회구성 자치단체 확대 조정)

┌ 명칭변경 : 진주권행정협의회 → 서부권행정협의회

└ 확대조정 : 진주, 사천, 고성, 산청(4개시군) → 진주, 사천, 고성, 하동, 산청(5개시군)

### 3. 주요골자

-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안 제명 및 제2조)
  - 진주권행정협의회 → 서부권행정협의회
-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확대 조정(안 제3조)
  -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산청군(4개시군) →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5개시군)
- 불필요한 부분삭제 및 합리적 정비(현행규약제5조, 안제5조제1항, 안제10조제1항 안제14조)

### 4. 심의의결요청(안) : 붙임

##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을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으로 한다.

제2조중 "진주권행정협의회"를 "서부권행정협의회"로 한다.

제3조중 "고성군수" 다음에 "하동군수"를 삽입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5조로하고 제1항중 "(전체회의를 말함)"과 "(관련단체간  
부분회의를 말함)"을 삭제한다.

제7조 내지 제10조를 제6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항중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수 있다"를 "실장을 위원으로하는 실무협의회를 둘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계되는 단체만 운영할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1조 내지 제13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간사는 회장이 속하는 "기획담당부서의 과장  
으로 한다"를 "단체의 직원으로서 회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를 제15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약의 폐지) 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이 규약시행일부터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 진주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 협의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p><b>제명</b> <u>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u></p> <p>제2조(명칭) 이 행정협의회는 <u>진주권행정협의회</u>(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p> <p>제3조(구성) 행정협의회는 진주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u>산청군수</u>로 구성한다.</p> <p>제5조(회의참석) ①시장, 군수는 그 소속직 <u>원중에서 그 대리자를 선임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수 있다.</u></p> <p>②제1항에 의한 대리위원은 시장, 군수가 <u>발급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u>전체회의를 말함</u>)와 수시회(<u>관련단체간 부분회의를 말함</u>)로 구분하고 - - - - -</p> <p>② ~ ③(생략)</p> <p>제7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실무협의회) ①- 기획업무를 총괄 하는 <u>실장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급을 위원으로,</u> 하는 실무협의회를 <u>둘수 있다.</u></p> <p>②(생략)</p> <p>제12조 내지 제14조(생략)</p> <p>제15조(간사) 간사는 회장이 속하는 <u>기획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u></p> <p>제16조 내지 제17조(생략)</p>	<p><b>제명</b> <u>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u></p> <p>제2조(명칭) 이 행정협의회는 <u>서부권행정협의회</u>(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p> <p>제3조(구성) 행정협의회는 진주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u>하동군수, 산청군수</u>로 구성한다.</p> <p>(삭 제)</p> <p>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u>정기회와 수시회로</u> 구분하고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 내지 제9조(현행제7조 내지 제10조와 같음)</p> <p>제10조(실무협의회) ① - - 기획업무를 총괄 하는 <u>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u> 둘수 있으며 <u>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단체만 운영할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 내지 제13조(현행과 같음)</p> <p>제14조(간사) 간사는 회장이 속하는 <u>단체의 직원으로서 회장이 지명한다.</u></p> <p>제15조 내지 제16조(현행과 같음)</p>